

신용정보업감독규정 (개정)

1 요청사유 (금융데이터정책과, 2021.11.11.)

- (개정 내용)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'22.1.1일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,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이 미흡한 상황이므로
 -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, 서비스 제공정보 및 활용범위도 제한하는 규정 신설
- (요청 사항)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/F를 운영하여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였고,
 - 감독규정 개정이 늦어져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일('22.1.1일)을 도과할 경우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발생 우려가 있어 조속한 규정개정이 필요하므로 사전예고기간 단축 필요

2 검토 내용

- 동 규정은 국민의 권리·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, 신속한 개정을 통한 실익이 있으므로 사전예고기간 단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
 - ※ '금융위 법제업무 운영규정' 제20조 등에 따라 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사전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·단축 가능(동 규정 제20조제3항)

3 처리 의견

- 사전예고 기간 : '21.11.12일~11.22일 (10일간)